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이건주
대한민국 03079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9길 16 미화빌딩

발송일 (일/월/년) 2018년 12월 13일 (13.12.2018)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P23771-PCT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10435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09월 06일 (06.09.2018)

우선일 (일/월/년)
2017년 09월 29일 (29.09.2017)

국제특허분류(IPC)
H04M 1/02(2006.01)i, H01Q 1/24(2006.01)i

출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8년 12월 13일 (13.12.2018)

심사관
장기정
전화번호 +82-42-481-8364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12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2-9, 12	있음
	청구항	1, 10-11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2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 D1: KR 10-2008-0069401 A (삼성전자주식회사) 2008.07.28
- D2: KR 10-1607899 B1 (누보톤 테크놀로지 코포레이션) 2016.03.31
- D3: KR 10-2013-0017441 A (엘지전자 주식회사) 2013.02.20
- D4: KR 10-2017-0080638 A (칭다오 고어텍 테크놀로지 컴파니 리미티드) 2017.07.10
- D5: US 2009-0052720 A1 (DAISUKE NISHI 등) 2009.02.26

1. 신규성 및 진보성

1.1 독립항: 청구항 제1항

청구항 제1항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코텍(213)의 그라운드단이 연결되는 아날로그 그라운드(215)를 구비하는 제1 기관(210)과, 스피커(223), 이어잭(225), 제1 디지털 그라운드(227)를 구비하는 제2 기관(220)의 구성(D1: 단락 41, 44, 및 도면 3 참조)을 포함하는 휴대 단말기의 음향 장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입력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외부 전자 장치에 포함된 마이크론의 신호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1 핀, 마이크론의 접지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2 핀을 포함하는 커넥터를 포함하고, 제2 핀은 제2 접지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점에서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인용문헌 D1의 코텍(213)의 그라운드단(GND)이 아날로그 및 제1 디지털 그라운드(215, 227)와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특징(D1: 단락 46, 및 도면 4 참조), 및 동일한 기술 분야인 인용문헌 D2의 제1 및 제2 스피커 및 마이크론이 헤드셋 접지에 결합되는 특징(D2: 단락 35, 및 도면 3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가능합니다. 또한, 인용문헌 D1 및 D2는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위 구성요소들을 결합함에 있어 결합 전 구성요소들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변경한다거나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으로부터 자명한 것이므로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1.2 종속항: 청구항 제2항-제9항, 제12항

청구항 제2항은 제2 핀이 오디오 코덱 회로의 이어폰 피드백 단자와 연결되는 점에서 상기 인용문헌 D1 및 D2에 기재된 발명과 차이가 있으며, 상기 차이점은 다른 인용문헌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2항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습니다(PCT 제33조(2) 및 (3)).

청구항 제3항-제9항은 청구항 제2항을 직,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이므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습니다(PCT 제33조(2) 및 (3)).

청구항 제12항은 제2 핀이 오디오 코덱 회로의 이어폰 피드백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제2 핀은 도전성 패턴에 의해 오디오 코덱 회로의 제2 접지 단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점에서 상기 인용문헌 D1 및 D2에 기재된 발명과 차이가 있으며, 상기 차이점은 다른 인용문헌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2항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습니다(PCT 제33조(2) 및 (3)).

1.3 종속항: 청구항 제10항-제11항

청구항 제10항에 기재된 발명의 추가적인 기술적 특징은 제1 접지부와 제2 접지부 사이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필터 회로를 포함하는 점에서 인용문헌 D1 및 D2와 차이가 있으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선택사항에 해당합니다.

청구항 제11항에 기재된 발명의 추가적인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이어잭(225)의 구성(D1: 단락 38, 및 도면 3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0항-제11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PCT 제33조(3)).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제1항-제12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4)에 따라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